#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237

발의연월일: 2024. 11. 5.

발 의 자:정혜경·전종덕·박홍배

민형배 • 윤종오 • 김태선

이학영 · 이재강 · 김남근

강득구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조건인 법정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 등"이라 한다)를 인정하되,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연장근로 등에 대한가산수당의 지급은 가중된 근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사업장에서는 법정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음.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과 수당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 합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은 정하되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각종 수당 등을 사전에 일정액으로 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므 로 이를 인정할 경우 현행법의 법정근로시간 제한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현행법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기위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주요내용

포괄임금계약의 금지원칙과 구체적 유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해당 규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일·주·월 단위로 기록하도록 하여 위법한 포괄임금계약에 대한 근로감독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포괄임금계약 금지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도록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안제22조의2, 제50조제4항 신설 등).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포괄임금계약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내용으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1. 기본급(임금총액에서 제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하고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 가산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 2. 기본급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제56조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
- 3. 근로자가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데 대한 보상금이 포함된 금액을 급여액으로 정하는 근로계약

제42조 중 "명부와"를 "명부, 제50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측정기록," 으로 하며,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임금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용자는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 개시·종료 시간을 일·주·월 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114조제1호 중 "제47조"를 "제22조의2, 제47조"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	423	조(	계으	<b>ᅣ</b> 샤	큐	의	보존	=)	사-	용.	자
	는	J	로.	자	명년	<b>부와</b>	: 대	통	렁	령	<u>0</u>
	로	정	하늯	= =	그로	.계9	약에	권	<del></del> 한	<u>-</u>	중
	요현	한	서	류를	31	년긴	보 보	존	하	ᅼ	야
	한1	<b>구</b> .	< प्	<u></u>	신	설>	>				

제50조(근로시간) ① ~ ③ (생략)

<신 설>

-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u>제4</u>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명부, 제50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측정기록,
<u>다만, 임금에 관한</u>
중요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
<u>야 한다.</u>
제50조(근로시간)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사용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업
무 개시·종료 시간을 일·주
·월 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하
여야 한다.
제114조(벌칙)
<u>.</u>
1
제22조의2, 제47조